

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승인 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공개

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 결과 및 취업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

■ 공개근거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

■ 공개대상 : 제88회(2025.12.15.)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

■ 취업심사 결과

○ 취업제한 심사(4건) : 취업가능(4건)

퇴직당시			취업(예정)		심사결과	결정사유
소속	직급	퇴직시기	기관(직위)	시기		
경상북도	지방행정 사무관	2023년 1월	가톨릭상지 대학교(사감)	2025년 1월	취업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
성주소방서	소방령	2022년 12월	(주)목성엔지 니어링(과장)	2025년 4월	취업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
칠곡소방서	소방경	2023년 6월	세안이엔씨(주) (부장)	2025년 2월	취업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
칠곡소방서	소방경	2022년 6월	선우종합건설(주) (부장)	2025년 2월	취업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

※ 상기내용은 취업심사 결과이며, 실제 취업여부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.

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】

구 분	주 요 내 용
취업제한	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·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
취업불승인	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*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*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, 경영개선, 임용 전 종사 분야,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
취업가능	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·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
취업승인	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(「공직자윤리법시 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)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